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9. 13 (수) 함명섭 의원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06. 9. 25(화)

다. 상정일자 : 2006. 9. 27(수) 제1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6.9.27) 상정·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함명섭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(법률 제7935호)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제명을 "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"을 "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

○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를 규정함(안 제2조)

○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운영을 규정함(안 제3조)

○ 정례회에서의 심의 안건을 규정함(안 제4조)

○ 임시회의 회기운영과 심의 안건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가.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됨에 따라 총회의 일수를 규정하고, 정례회와 임시회의의 회기당 최대일수를 규정한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로 규정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○ 정례회의는 연 2회 개회하고 45일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임시회의는 1회기당 20일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,

○ 1차 정례회의에서는 결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, 2차 정례회에서는 당초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
다.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

제출년월일 : 2006. 9. 13.
제 안 자 : 함명섭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가.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(법률 제7935호)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제명을 "평창군의회 정례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"를 "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"로 변경함

나.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다. 의회의 정례회의 회기운영을 규정함(안 제3조)

라. 정례회에서의 심의 안건을 규정함(안 제4조)

마. 임시회의 회기운영과 심의 안건을 규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췌문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없음.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평창군조례 제　　호

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"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"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"를 "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고 한다) 제38조 내지 제39조, 제41조 및「동법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고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회의 총일수)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.
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제4조(정례회의 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심의) ①의회는 법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고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.

②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공포전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관련법규 발췌

지방자치법

제38조 (정례회) ①지방의회는 **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**한다.

②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9조 (임시회) ①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**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**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임시회의 소집은 시·도에 있어서는 집회일 7일전에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1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②삭제

③**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**.

제118조 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5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
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25조 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9조의4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 ,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
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